2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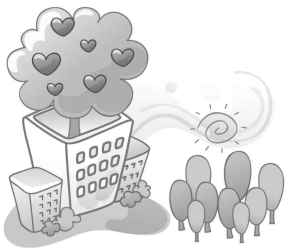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총괄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국토 교통부	건설기술연구사업	건설/교통, 정보/통신, 재료, 기계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6~108	563.49	780	1월	152
국토 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	건설/교통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연구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12~60	234.77	2,935	1~3월	160
국토 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	건설/교통, 기계,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화공, 환경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산업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응용연구, 개발연구	'07~계속 사업	250.13	5,000	2~4월	168
국토 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경설/교통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24~96	530.99	4,000	6월	177
국토 교통부	교통물류연구사업	건설/교통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응용연구, 개발연구	계속사업	566.27	3,539	7~8월	185
국토 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	건설/교통, 기계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36~60	976	3487	1~2월	192
국토 교통부	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	건설/교통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연구개발	개발연구	계속사업	445.4	3,712	2월	200
국토 교통부	건설교통기술촉진 연구사업	건설/교통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연구개발, 사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국제협력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0~60	535	350	8월,	211
국토 교통부	건설교통기술지역 특성화사업	건설/교통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12~60	63	900	2월	219
국토 교통부	건설교통연구기획 사업	건설/교통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연구개발	개발연구	0~12	30	94	2월	226
소계	10개 사업									

건설기술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박하준

(전화 : 044-201-3549)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정보/통신, 재료,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6개월~108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63.4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80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SOC 시설물의 전주기(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및 세계선도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기술력 제고

□ 사업목표

○ 5대 분야 사업목표

Safe SOC	Midas SOC	Advanced SOC	Recycle SOC	Top SOC
SOC 시설물 재해 20% 저감 기반기술	경제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기술	IT/NT 등과의 기술융합형 SOC 구축 기술	환경부하 및 에너지 저감형 녹색기술	초장대교량 등 미래시장 선도형 세계 최고기술

□ 지원방향

○ 실용화 대상과제, 테스트베드 적용중인 과제 지속 지원

○ 국정 목표 및 비전과 부합하는 신규과제 우선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Safe SOC 분야

○ SOC 인프라 시설물의 재해, 재난, 안전 등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및 관리기술

□ Midas SOC 분야

○ 건설공기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등 경제성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기술

□ Advanced SOC 분야

○ 다분야 기술의 유기적 융합(Fusion of Technologies)을 통한 SOC 시설물 성능 고도화 및 장수명화, 시공 자동화 등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新서비스 창출 기반 기술

□ Recycle SOC 분야

○ 건설산업 탄소배출의 원천적 억제 등 환경부하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 Top SOC 분야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핵심기술 및 뉴프런티어(New Frontier) 신공간 창출 기술

3.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Safe SOC

– 방호·방폭 구조물용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재료 개발, 디지털 정보기반 터널시공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등

○ Midas SOC

– 모듈러교량 기술개발 및 실용화, TBM 핵심 설계·부품기술 및 TBM터널의 최적 건설기술

○ Advanced SOC

– 고층 구조물 외벽 유지관리용 지능형 로봇시스템 개발, 비파괴 융합조사기법 및 지반정수 평가시스템 개발 등

○ Recycle SOC

- 탄소저감형 건설재료 기술 개발, 대구경 대수심 해상기초시스템 기술 개발 등

○ Top SOC

- 초장대교량사업단, 해저터널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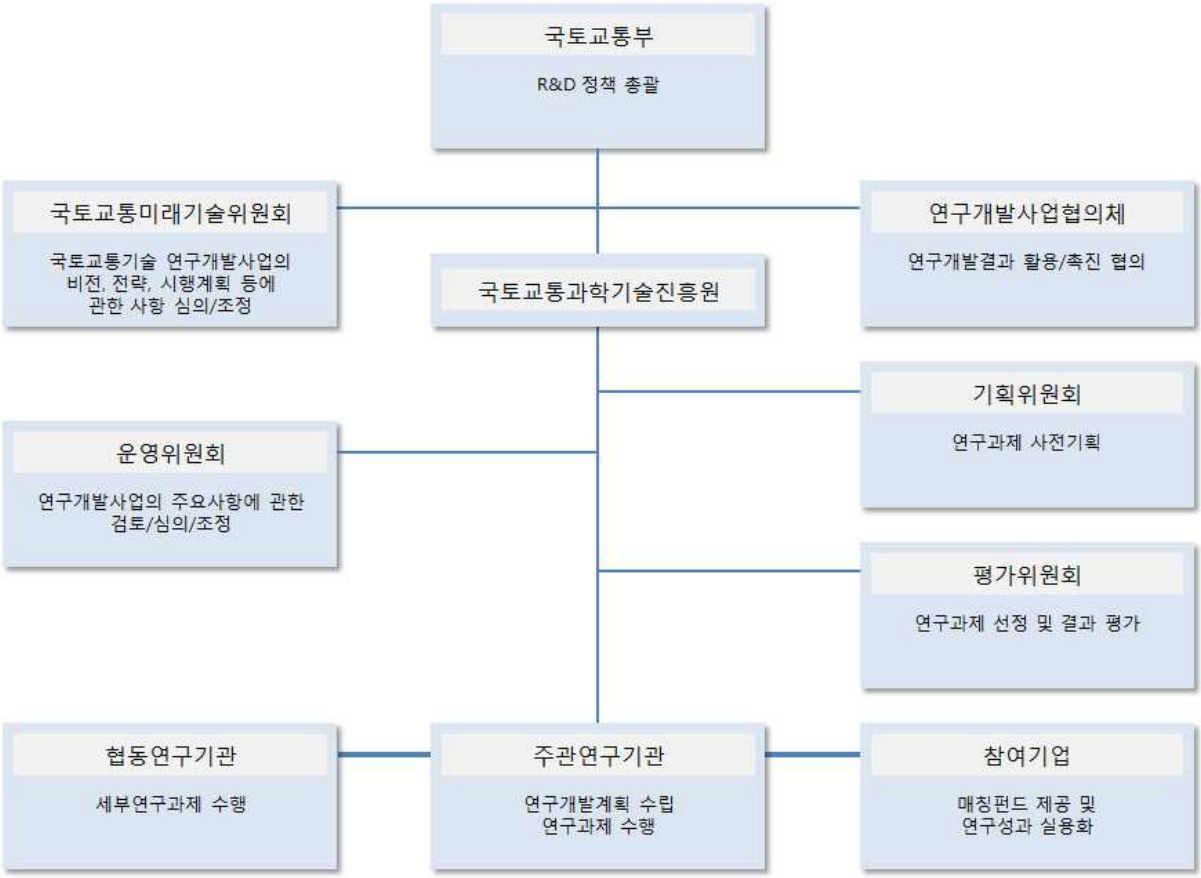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1월 : 시행계획 공고

□ ~8월 : “방호·방폭 구조물용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재료 개발”, “도시방재형 토사재해 회피기술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정경인 사무관
(Tel : 044-201-3557, E-mail : crimson@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OC플랜트사업실　유영화 실장
(Tel : 031-389-6445, E-mail : yyh1016@kaia.re.kr)

물관리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박재규

(전화 : 044-201-4821, E-mail : jaepak@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34.77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935백만원

1. 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물관리 위기상황 극복 및 물재해 저감, 안정적 수자원 확보,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 기술개발

○ 사업목표

- 1인당 이용가능수자원량 1,700 m^3/년 확보로 물 부족 국가 탈출
- 물산업 해외시장 점유율 1% 달성
- 대도시 수재해 피해액 25% 저감
- 하천환경 조성 관련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 달성

○ 추진방향

- 기후변화로 인한 'Water Shock'에 적극 대비하고 물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 기초기술,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원천기술, 지속가능한 도시물순환 기술 등 대국민 환경서비스 분야 핵심기술 집중 지원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침수 저감기술 및 하천 생태환경 기술 등 국민체감형 사회현안 해결 기술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안정적 수자원 확보 분야(Stable Water)

○ 기후·사회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변동예측기술 개발과 물부족에 능동대처가 가능한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로 물부족 국가 탈출

- ’20년까지 1인당 이용가능수자원량 1,700m^3/년 확보에 기여

* 우리나라 1인당 이용가능 수자원량은 1,553m^3(’07)으로 UN이 정한 기준(1,700m^3) 이하인 물스트레스국

□ 지능형 수자원 관리 분야(Smart Water)

○ 전통적 상수관리에서 탈피하여 IT/GIS/수문/기상/환경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물확보·배분·관리 등 물순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토탈솔루션 개발

- ’20년까지 해외시장 점유율 1% 달성에 기여

□ 재해에 강건한 하천(Safe River)

○ 홍수로부터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첨단 물정보 시스템 개발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천시설물 지능화 및 도시 침수 저감기술 개발

- ’20년까지 대도시 수해재 피해규모 25% 저감에 기여

*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 예년 대비 5.9배 증가 (’80~’90년대 4,600억원→’02~’06년 2.7조원)

□ 지속가능한 하천환경 조성(Sustainable River)

○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효율적 하천공간 활용기술과 치수 능력과 하천환경의 건정성을 동시에 확보·유지할 수 있는 생태친화형 하천환경 조성기술 개발

– ’20년까지 하천환경조성기술 선진국 대비 90% 달성

* 현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70%

3.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안정적 수자원 확보 분야

– “수변지하수 활용 고도화”, “대규모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등 지원

○ 지능형 수자원 관리 분야

- “Water Grid 지능화”, “건전한 도시물순환인프라의 저영향개발(LID) 및 구축·운영기술” 등 지원

○ 재해에 강건한 하천 분야

- “내외수 연계 도시침수저감 능력 향상 기술” 등 지원

○ 지속가능한 하천 분야

- “생태하천 조성기술” 등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1사분기 : '13년도 신규과제 공고 및 사업설명회

□ 2사분기 : '13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 연　　중 : '13년도 계속과제 연차별 중간평가 및 협약 등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박재규 사무관
(Tel : 044-201-4821, E-mail : jaepak@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SOC플랜트사업실
유영화 실장
(Tel : 031-389-6445, E-mail : yyh1016@kaia.re.kr)

플랜트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양동인 사무관

(전화 : 044-201-3544, E-mail : ydi60@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기계, 에너지/자원, 종보/통신, 화공, 환경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07~계속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50.13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0

1. 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핵심공정 개발, 기본설계 및 실증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적용은 물론 해외플랜트 수주 경쟁력 증대

○ 목표(’20년까지)

– 동토지역 자원 탐사·시추·개발·처리기술 확보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 100억불 달성에 기여

– 물·에너지 분야 시장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3건 확보

- 기존 플랜트 시설물의 안전성 개선으로 고장, 지진 등으로 인한 2차적 피해 최소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도시운영 및 주거민 에너지 부담 50% 절감 및 BAU 30% 감축 기여

○ 추진방향

- 새정부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R&D 적극 지원

  ·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4번),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7번),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8번),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10번),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89번),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91번),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96번) 등 정책 부합 과제 우선 추진

- 과학기술을 통한 플랜트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 ICT 등 다분야 기술간 융합을 통한 플랜트 신시장·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조적 R&D 적극 지원

- 플랜트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핵심기술의 대형 실증시설 구축과 기술검증에 정부예산 투자 집중

- 플랜트건설 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을 위한 창의적인 플랜트건설 관련 과제 발굴 및 지원

  · 독자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 R&D과제를 통해 해외진출의 첨병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여, 해외 동반진출 유도

2. 지원대상분야

□ 미개척지 공간자원 확보 기술(Pioneer Tech.)

○ 극지, 심해저, 동토 등 미개척지의 자원·에너지 개발·이송·활용에 관한 기술

– ’20년까지 동토지역 자원 탐사·시추·개발·처리기술 확보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 100억불 달성에 기여

□ 차세대 물·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술(Global FEED Tech.)

○ 물·에너지분야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상류부문(기획컨설팅, FEED, 라이센스 등)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 ’20년까지 물·에너지 분야 시장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3건 확보

□ 문제 해결형 기술(On-demand Tech.)

○ 플랜트 시공·운영·관리 중 발생하는 현안(재해안전문제, 환경문제 등)과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 기존 플랜트 시설물의 안전성 개선으로 고장, 지진 등으로 인한 2차적 피해 최소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생활기반시설 고도화 기술(Life-line Infra Tech.)

○ 발전, 소각, 하폐수처리 등 도시의 운영 및 주거에 필요한 자원·에너지의 저탄소·고효율 순환 및 활용을 통한 도시 운영 및 주거에너지 절감 기술

– ’20년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30% 감축과 도시운영 및 주거민 에너지 부담 50% 절감에 기여

* ’20년까지 ICT 기반의 물, 에너지, 물질 등 수요–공급 예측·관리 기술(multi–grid) 확보 및 도시운영 및 주거민 에너지 부담 50% 절감

3.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미개척지 공간자원 확보 기술 분야

– “LNG플랜트 사업단”, “동토지역 자원이송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 등 지원

○ 차세대 물·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 “MD/PRO 복합탈염공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개발” 지원

○ 문제 해결형 기술

– “해수담수화 플랜트 연구성과 활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

– 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2~4월 : 신규과제 공고

□ 4~6월 : 신규 및 계속과제 협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65호)

○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치침

○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양동인 사무관
(Tel : 044-201-3544, E-mail : ydi60@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SOC플랜트사업실
유영화 실장
(Tel : 031-389-6445, E-mail : yyh1016@kaia.re.kr)

도시건축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정형교

(전화 : 044-201-3735, E-mail: jhk7856@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9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0.9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00백만원

1. 사업개요

□ 목적

○ 국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재생 활성화 등 관련 기술 개발

□ 목표

○ (살기좋은 도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주거 복지·환경 개선 기술 확보

○ (경쟁력 있는 도시) 세계 Top Class의 도시 구축 기술 확보

○ (지속가능한 도시) 2020년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27% 감축 기반기술 확보

□ 추진방향

○ 살기좋은 도시

– 도시재생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주거복지·환경 개선 기술 확보

○ 경쟁력 있는 도시

– 초고층빌딩 설계·시공기술, 한옥기술, 차세대 공간정보 표현기술 등 세계 Top Class의 도시구축 기술 확보

○ 지속가능한 도시

–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실용화 연구 등 '20년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27% 감축 기반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살기좋은 도시

○ 재난재해에 안전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향상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구현 기술을 신규로 추진

– 쇠퇴한 노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연구 마무리

* '13년 주요 연구내용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구조 안전	· 기존 건축물 구조성능 개선을 위한 보강설계 기준 개발
도시재생	·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녹색재생기술·재생기법 등 연구결과물을 테스트베드 현장 적용

□ 경쟁력 있는 도시

○ U-City 고도화를 위한 설계기술, 도시건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 등 지원

– 초고층빌딩, 한옥기술, 실시간 공간정보 표현기술 등 계속과제 지속 추진

* '13년 주요 연구내용

초고층빌딩	· 국산 진동제어장치 및 800MPa 강재 시제품 테스트베드 현장 검증
한옥	·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단지 구축
공간정보 표현	· 실시간 전자지도 구축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 지속가능한 도시

○ 탄소저감형 도시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계속), 제로에너지 주택모델 개발 등 지원

* '13년 주요 연구내용

제로에너지 주택	· 제로에너지 주택 실현을 위한 설계 및 시공기준 개발
탄소저감형 도시조성	· 도시공간–교통을 연계한 탄소관리 단위시스템 구축 등
녹색건축물 실용화	· 녹색 건축물 녹색화 확산을 위한 건축물 유형별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등

3.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살기좋은 도시

– “도시재생”, “지진 대비 기존 건축물 구조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등 지원

○ 경쟁력 있는 도시

– “초고층빌딩 설계기술”, “초고층빌딩 시공기술” 등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 “시장수요기반 녹색건축물 실용화 연구”,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형 도시조성 기술연구” 등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6월 : '13년 신규과제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9월 : '13년 신규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 2월~9월 : '13년 계속과제 단계/중간평가 및 협약 등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운영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정형교 사무관
(Tel : 044-201-3735, E-mail : jhk7856@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
박남회 실장
(Tel : 031-389-6461, E-mail : nhpark@kaia.re.kr@kaia.re.kr)

교통물류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유병철

(전화 : 044-201-3818, E-mail: bcryu@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계속사업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66.27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539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선진국 대비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과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 분야별 '20까지 목표

- 사고없는 안전교통 : 교통 사망자 40% 감소
- 막힘없는 첨단교통 : 교통혼잡비용 30% 감소
- 공해없는 청정교통 : 온실가스 BAU 대비 34% 감축
- 차별없는 복지교통 : 모두가 편리한 복지교통 구현

- 단절없는 물류교통 : GDP 대비 물류비 8% 이내

2. 지원대상분야

□ 사고없는 안전교통

- 운전자 실수 최소화 및 사고피해 경감, 도로인프라 안전 성능 향상,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선진화 등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 막힘없는 첨단교통

- 도시부 비효율적인 신호운영 혁신, 도시부 상습 지정체구간 해소, 간선도로 용량 증대 및 통행속도 향상 등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 공해없는 청정교통

- 화석연료 'Zero'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소음, 분진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 구현, 능동적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등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 차별없는 복지교통

- 교통약자 Barrier Free 보장, 교통이용 사각지대 해소, 교통서비스 만족도 99% 달성 등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 막힘없는 물류교통

- 수송 및 보관 에너지 1/2 절감, 물류 작업 속도 2배 향상, 인간중심 물류작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고없는 안전교통

-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 계속추진(1건), 상용차 운행기록 활용 감시기술, 재난재해시 도로 안전, 자동차 튜닝 인증 등 신규추진(3개)

○ 막힘없는 첨단교통

- 스마트하이웨이, 교통정책 분석시스템, 교통상황 예측,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도로교통 시설물 통합제어 등 계속추진(5개)

○ 공해없는 청정교통

- 탄소중립형 도로 기술개발 계속추진(1개)

○ 차별없는 복지교통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신규추진(1개)

○ 막힘없는 물류교통

- 물류센터 상하역 이송, 고속 적재반출 장비 등 계속추진(2건), 에너지 절감형 물류시설, 경량화물용 물류장비, 하역장비 등 신규추진(3건)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7월~8월 : '재난재해시 도로 안전',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절감형 물류시설' 등 3개 신규과제 공고, 선정, 협약

□ 7월~10월 : '위성항법 기반 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지능형 물류센터 상하역 이송시스템 기술개발' 등 2개 계속과제 중간평가 및 연차협약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　유병철 사무관
(Tel : 044-201-3818, E-mail : bcryu@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물류사업실　백승훈 실장
(Tel : 031-389-6440, E-mail : shpaik@kaia.re.kr)

철도기술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조현준

(전화 : 044-201-4603, E-mail : LikeDavid@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공단, 공사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76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487백만원

1. 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철도시스템을 고효율, 고속화, 친환경적으로 구현하고,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 일류 철도기술 확보 및 일자리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

○ 비전

- 국민 행복을 위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 개발
-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3대 전략목표

- 민생현안을 해결하여 국민행복 실현
- 철도경쟁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를 선도
- 세계 1등 기술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 중점 추진방향

- 철도의 대용량화 및 고속화를 향상시키고, ICT분야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이용편의성 증진 및 철도 SOC 건설비용 저감, 강소기업육성을 위한 핵심부품 및 소재 국산화 연구에 집중투자

2. 지원대상분야

□ 3대 중점추진분야 지원

3대 중점추진분야	12대 중점프로젝트
(SMART Railroad) 빠르고 지능적인 철도	① 차량 및 인프라 고속화 기술 ② 수송력 향상 기술 ③ ICT기반 철도시스템 개발 ④ 신교통시스템 기술
(SAFE Railroad)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⑤ 사고/장애 예방 및 복구기술 ⑥ 철도 안전체계 및 인증체계 구축 ⑦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기술 ⑧ 소음진동 저감 및 쾌적성 향상기술
(ECONOMICAL Railroad) 정확하고 경제적인 철도	⑨ 철도운영 효율화 기술개발 ⑩ 철도유지관리 효율화 기술개발 ⑪ 철도건설비 저감 기술개발 ⑫ 철도환경비용 효율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빠르고 지능적인 철도(SMART Railroad)

- (차량 및 인프라 고속화 기술) 430km/h급 고속열차(HEMU-430X) 실용화, 분기기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등 기존 철도시스템 속도성능 향상 지원

- (수송력 향상 기술) 2층 고속열차 및 고속화물철도 수송시스템(CTX), 급곡선/급구배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등 기존 철도시스템 수송용량 향상 지원

- (ICT기반 철도시스템 개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등 ICT 융합기술 지원
- (신교통시스템 기술 개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및 무가선 저상트램 실용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시스템 등 신교통 기술개발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SAFE Railroad)

- (사고/장애 예방 및 복구기술) 차상 전기 검측시스템 자동 진단기술 및 고속철도 종합검측시스템 기술개발 등 지원
- (철도 안전체계 및 인증체계 구축) 철도차량/부품 시험규격 정비 및 기술기준 검증 등 지원
-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기술) 역사 이용효율 향상기술 개발 지원
- (소음진동 저감 및 쾌적성 향상기술) 소음진동 저감 원천기술 및 도시철도 터널·차량 공기질 개선 기술 등 지원

○ 정확하고 경제적인 철도(ECONOMICAL Railroad)

- (철도운영 효율화 기술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화 기술, 핵심부품 및 장치 기술개발, 고속철도 피크전력 저감기술개발 등 지원
- (철도유지관리 효율화 기술개발) 고정밀 철도교통 위치검지 기술개발 및 고속철도 자갈궤도 개량기술 개발 등 지원
- (철도건설비 저감 기술개발) 저비용 저심도 지하철도 시스템, 철도인프라 성능 및 건설비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등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1~2월 : 고속 종합검측차량 등 신규과제 공고

□ 3~6월 : 도시철도 터널 및 차량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등 계속과제 협약

□ 6~8월 : 급고선/급구배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등 신규과제 공고

□ 9~10월 : 철도핵심부품/장치 기술개발 등 계속과제 협약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안전과　조현준 사무관
(Tel : 044-201-4603, E-mail : LikeDavid@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미래철도사업실　이은호 실장
(Tel : 031-389-6470, E-mail : hlee@kaia.re.kr)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민풍식

(전화 : 044-201-4225, E-mail : psmin@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계속사업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45.4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12백만원

1. 사업개요

□ 개요

○ 세계 항공안전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항공강국 실현

- 차세대 항공기 제작 원천기술 및 인증기술 인프라 선진화
- 차세대 항행시스템 국산화 및 지능형 공항운영기술 선진화
- 핵심 항공정비기술 전문화 및 항공사고 예방기술 선진화

□ 목표

○ 세계 10위권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

- 선진국 대비 75~90% 수준의 항공 기술력 확보

※ 항공안전 (65→75%), 항행안전 (70→75%), 공항 (75→90%)

– 항공기 수출 기반 확보 및 운항사고율 50% 감소 등

※ 항공기급 한미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 추진방향

○ 현재 수행중인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당초 연구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 국내 첨단기술과 항공안전기술을 융합시켜 높아가는 항공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뒤쳐진 국내 항공산업 기반조성에 집중 지원

– 항공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위성기반 항법·관제·통신 및 첨단 공항운영시스템 기술개발 집중지원

– 소형항공기에 이어 무인기·중형항공기 국산화 보급기반 단계적 확대, 사고예방 기술개발 및 정비(MRO)·시험인프라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항공안전기술개발

○ 소형항공기 인증기 개발 및 BASA 체계 구축, 실시간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 등

□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 레저용 항공기 제작 및 인증기술 개발,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을 통해 항공레저 활성화와 사고예방 도모

□ 항공기 제동장치 정비/시험 인프라 기술 개발

○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급의 카본 브레이크 디스크의 재생 기술과 관련 항공기 제동장치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 및 안전성 인증 획득

□ 항공사고위험 예측·분석 및 정비신뢰성관리프로그램 개발

○ 항공기 및 부품의 정비신뢰성을 분석, 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정비프로그램 개발

□ 민간 무인항공기 보급기반 구축 탐색개발

○ 인증체계 및 세부기술기준 수립 등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무인기 운용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수입·개발되는 민간 무인항공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항공관제용 통합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

○ 항공관제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기술 국산화로 우리나라 하늘 길을 국내기술로 운영·관리하기 위함

□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 개발

○ ICAO 표준 위성기반 정밀 이착륙시스템(GBAS) 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인증체계를 확립하고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항공기 탑재 및 지상 위치표지장비를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선점 유도

□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개발

○ 항공 데이터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항공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 및 항공 데이터 운용 관리 기술을 개발

□ 다변측정 감시시스템 기술개발

○ 레이더에 의한 항공기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 항공교통 감시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기 감시기술인 다변측정 감시시스템 (Multilateration, MLAT) 기술 개발

□ 차세대 항공보안검색시스템 개발

○ 항공보안 검색장비 국산화·현대화·첨단화를 통하여 대외 의존도를 해소하고 항공보안의 효율성을 증진

□ 공항 수화물 자동처리 시스템 기술개발

○ 공항여객의 편의성 향상과 신속하고 안전한 공항운영을 위해 차세대 수화물자동처리시스템 등 IT기술을 융합한 첨단 공항운영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공항산업 수출기반 확대·조성

□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항공등화 시스템 기술개발

○ 차세대 고효율 항공등화 감시 및 제어 시스템(LED 항공등화 제어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기술개발 및 항공기 지상이동 안내 및 관제시스템(A-SMGCS*) 국산화 개발

* A-SMGCS : Advanced Surface Movement Guidance & Control System

3.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항공안전기술개발 : 계속지원, ’07.12~’15.5

○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 계속지원, ’10.09~’14.08

○ 항공기 제동장치 정비·시험 인프라 기술 개발 : 계속지원, ’11.12~’15.9

○ 항공사고위험 예측·분석 및 정비신뢰성관리프로그램 개발 : 계속지원, ’11.12~’15.6

○ 민간 무인항공기 보급기반 구축 탐색개발 : 신규추진, ’13.12~’15.12

○ 항공용 위성항행통신시스템 개발 : 계속지원, ’10.09~’14.09

○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 계속지원, ’07.12~’14.6

○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개발 : 계속지원, ’12.12~’17.8

○ 다변측정 감시시스템 기술개발 : 신규추진, ’13.6~’18.6

○ 차세대 항공보안검색시스템 개발 : 신규추진, ’13.12~’18.12

○ 공항 수화물 자동처리 시스템 기술개발 : 신규추진, ’13.12~’17.12

○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항공등화 시스템 기술개발 : 신규추진, ’13.12~’18.12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2월 : 전문기관과 ’13년 위·수탁협약 체결
: ‘항공용 다변측정 감시시스템(MLAT) 개발’ 신규과제 공고

□ 4월 : ‘항공용 다변측정 감시시스템(MLAT) 개발’ 신규과제 재공고

□ 5월 :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7차년도 협약

□ 6월 : ‘항공용 다변측정 감시시스템(MLAT) 개발’ 선정 및 협약,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중간평가 및 6차년도 협약

□ 8월 : ‘항공사고 위험요인 예측분석 및 정비신뢰성 관리프로그램 개발’, 중간평가 및 3차년도 협약,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개발’ 중간평가 및 2차년도 협약

□ 9월 :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 개발’, ‘항공기 제동장치 정비·시험 인프라 기술 선정 및 협약

□ 10월 :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중간평가 및 4차년도 협약, ‘운송용 항공기 사고예방기술 개발 기획’, ‘기후변화 대응 항공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기획’ 최종평가, ‘민간무인항공기 보급기반구축 탐색개발’, ‘공항 수화물 자동처리 시스템 기술 개발’, ‘차세대 항공 보안검색장비 개발’,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항공등화시스템기술 개발’ 공고

□ 12월 : ‘항공기용 엔진 국산화 기반 구축 기획’ 최종평가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민풍식 사무관
(Tel : 044-201-4225, E-mail : psmin@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물류사업실　백승훈 실장
(Tel : 031-389-6460, E-mail : shpaik@kaia.re.kr)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김연희

(전화 : 044-201-3262, E-mail : smileyh@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기업, 연구소, 기타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사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0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50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설교통분야 기술표준화,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에 단기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기반환경 구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공공기반 기술, 장비시설인프라, 기술사업화 지원, 자유공모 지원, 국제기술협력 등 5대 분야 연구

□ 사업목표

○ 건설교통 R&D 리더쉽 확보를 위한 글로벌 건설교통기술개발 기반 강화

- 건설교통 R&D 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수요대응형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5대 분야별 목표

국제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지원	자유공모 지원	장비시설 인프라	공공기반 기술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기초·원천, 창조모험형 등 신수요 창출	기술실증을 위한 장비시설 인프라 강화	건설생산성 향상, 해외진출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국제기술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및 국제 공동연구, 건설교통분야 전략기술개발형(Top-Down형)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추진

○ (기술사업화 지원) 건설교통 R&D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확대를 위한 시제품 현장적용을 통한 검증

○ (자유공모 지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원천, 창조모험형 등 자유공모 과제 추진

○ (장비시설인프라)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시설 구축,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대형 실험시설 구축 등 신규추진

○ (공공기반기술) 건설생산성 향상, 해외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글로벌 녹색 건축표준 설계기준 및 시방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국제기술협력

○ 국토교통분야 중 기술의 중요도, 시급성 등 전략적으로 중요하나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기술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도국/선도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

○ 건설, 교통분야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 기획, 단기간의 추가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자유공모 지원

○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원천·핵심기술을 발굴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및 일반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Bottom-up 방식으로 발굴·지원

□ 장비시설인프라

○ 건축물 및 도시 기반시설물의 붕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한하중에 대한 거동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시설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물 영향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대형실험시설 구축

○ 구축 연구시설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공공기반기술

○ 기술기준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지원

○ 사회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및 기반 구축 지원

○ 사회안전 제고 및 재해위험관리 기반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 부서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국제기술협력) “분산형 시뮬레이션 기반 시설물 재난 대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2개 계속과제 연차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 국토교통분야 공공기술 및 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18개월 이내, 총 연구비 5억원 이내 지원

○ (자유공모 지원)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 발굴 및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하여 최대 3년, 연 1억원 내외 연구 지원

○ (장비시설인프라) 구축대상 연구시설별 주관기관 선정 및 기획연구 결과로 도출된 소요예산 범위내, 4~5년 지원

○ (공공기반기술) “성능평가 기능을 갖춘 건축설비 설계기준 개발” 등 8개 계속과제 연차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라 총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로 민간매칭

○ 연차협약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판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국제기술협력

○ (신규과제) 글로벌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과제 공모·선정(8월)

○ (계속과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를 통한 계속지원(12월)

□ 기술사업화 지원

○ (신규과제) 공공기술 및 기업 보유기술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7월)

○ (계속과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한 계속지원(4～5월)

○ (종료과제) 연구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및 보고서 발간(2～8월)

□ 자유공모 지원

○ (신규과제) 기초원천 및 창조모험형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4월)

○ (계속과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를 통한 계속지원(연중)

○ (종료과제) 연구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연중)

□ 장비시설인프라

○ (신규과제)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시설 구축” 등 2개 과제 선정 및 협약(10월), “건설연구 인프라 운영고도화” 과제 선정 및 협약(8월)

□ 공공기반기술

○ (계속과제) “구조성능평가 실험 프로세스 표준화” 등 8개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계속지원(7～9월)

○ (종료과제) 연구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및 보고서 발간(9～11월)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김연희
(Tel : 044-201-3262, E-mail : smileyh@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책개발팀 박준우
(Tel : 031-389-6477, E-mail : jwpark@kaia.re.kr)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김연희 사무관

(전화 : 044-201-3262, E-mail : smileyh@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3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연구인력 양성, 지역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전문가 주도의 R&D역량 강화

□ 사업목표

○ 지역별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화된 실용기술개발 집중지원

○ 지방산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착기술 개발

○ 지역수요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선도할 연구인력양성 및 인력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추진

□ 추진방향

○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따라 지역마다 특수하게 요구되는 건설기술 수요와 지역애로 건설기술들의 해결

○ 생태·자연환경·재해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건설기술 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적인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지역기반형 건설기술 연구개발 추진

○ 지역성(Locality)을 활용한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를 육성하고 산학연 중심의 기술협의체 구성

2. 지원대상분야

□ 자연재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역애로, 지역 개발수요 등 지역별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화 실용기술개발 집중지원

○ (강원권) 산불, 낙석 및 산사태, 기능성 콘크리트 개발 관련 기술

○ (충청권) 생태, 어메니티 등 도시계획, 생태 연안역 및 녹색공간

○ (호남권) 에너지, 내풍, 연육교 및 연도교, 기상이변 관련 기술

○ (대경권) 산업단지 및 산업설비, 폐자원 활용 등 플랜트관련 기술

○ (동남권) 수자원 확보, 해안공간 및 항만, 물류시설 등 관련 기술

○ (제주권) 지하 열에너지, 수자원관리, 지질특성 관련 기술

□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에너지화, 생태공간 조성 등 국가 패러다임과 부합되는 되는 과제 추진

3.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개 권역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신규 지원(동남권, 강원권, 충청권)

- 지원규모 : 3개 과제 총 1,104백만원
- 연구기간 : 5년

○ 충청권, 제주권, 호남권, 대경권 등 4개 권역에 대한 연구단과제 계속 지원

- 4개 연구단 총 5,196백만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기업참여시 매칭)

- 기초·기반기술, 기획분야 연구개발의 경우 전액 정부지원 가능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안) 수립	전문기관
사업계획 심의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사업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추적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2월

○ 3개 권역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행기관 공모(동남, 강원, 충청)

□ 5월

○ 3개 권역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행기관 선정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관리지침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김연희 사무관
(Tel : 044-201-3262, E-mail : smileyh@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사업실　박남회 실장
(Tel : 031-389-6461, E-mail : nhpark@kictep.re.kr)

건설교통연구기획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김연희

(전화 : 044-201-3262, E-mail : smilehy@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년 단위 지원 : 0개월 ~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4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래 건설교통기술 발전을 선도할 新가치 창조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미래핵심기술 등의 발굴·기획

□ 추진방향

○ 국제사회 선도의 新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기술 발굴·기획

○ 국민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국민체감형 R&D 발굴

○ 국토해양 R&D 발전전략(국토부 방침, '10.10)에 따라 기획연구비를 전체 R&D예산의 0.8%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10~'20)

2. 지원대상분야

□ 기획연구

○ 건설교통분야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연구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별 평균 94백만원

○ 지원내용 : 건설교통분야 미래핵심기술 등에 대한 기획연구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단 기업 참여시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수 등에 따라 일정비율 기업 매칭펀드 부담(기초·기반기술·기획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 전액 정부 지원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획연구과제 수요조사	• 국토교통부
⬇	
기획연구과제 우선순위 평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기획연구착수	• 전문기관
⬇	
기획연구수행	•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	
기획결과사전검토	• 전문기관/기획타당성검토위원회
⬇	
최종보고서 발간	• 주관기관
⬇	
신규과제 반영요청	• 국토교통부
⬇	
신규과제 선정평가	• 국토교통미래위원회 분과위원회
⬇	
신규과제 반영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6. 추진일정

□ 2월 : 신규 기획과제 공고

□ 3월 : 미래핵심기술 기획과제 선정 및 협약

□ 8월 : 신규 기획과제 공고(사업 잔여예산 발생시)

□ 10월 : 기획과제 선정 및 협약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시)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상기 제출서류는 신규 과제에 해당되며 과제별 공고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자료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51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조

<문 의 처>

○ 정 부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김연희 사무관
(Tel : 044-201-3262, E-mail : smilehy@korea.kr)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미래전략실 정규원 실장
(Tel : 031-389-6421, E-mail : jungq1@kaia.re.kr)